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18. 11. 30(금) 총 2매(본문 2매)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 당 자	· 과장 이상일, 사무관 나귀용, 사무관 엄수연 · ☎ (044)201-3840, 4990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“국내車산업…5배 징벌적 손해배상 폭탄” 보도 관련

- 최근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안은 지난 9.6일 ‘BMW사태’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「자동차 리콜대응체계 혁신방안」 주요내용이 담겨있습니다.
-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.
 -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정상적으로 리콜을 진행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 - 또한,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미 최대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.
- 차량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은 ①정부의 차량 결함조사 중인 상황에서, ②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도 제작사가 ③리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.
 - 이 경우에도 제작사가 성실히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○ 또한,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,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소명할 경우 조속한 리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.

□ 한편, 리콜기준도 설계, 제조 등 문제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, 사고 발생 시 사망 혹은 부상에 이르는 경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
< BMW 화재 유탄맞은 국내車산업…5배 징벌적 배상 폭탄(매일경제, 11.29) >

◆ 자관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작사나 부품사가 차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**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** …(중략)… 최대5배까지 규정한 **징벌적 손해배상**도 자동차업계 부담을 가중 …(중략)… **리콜 규정**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듬는게 먼저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엄수연 사무관(☎ 044-201-499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